

# 학교법인 대진대학교

## 2025학년도 제2차 이사회 회의록

구 분	이 사	감 사
임원정수	7인	2인
재적임원	6인	2인
참석임원	6인	1인

I. 회의일시 : 2025년 06월 30일(월요일) 오전 11:00

(회의소집 통보일 : 2025년 06월 19일 서면통보)

II. 장 소 : 학교법인 대진대학교 이사회회의실(대진대학교 본관 3층)

III. 임원 출결 사항

○참석임원

- 이 사( 6 인) : 윤은도, 박광훈, 이태열, 김화옥, 김욱, 조태형

- 감 사( 1 인) : 윤갑중

○결석임원

- 이 사( 0 인) : 없음

- 감 사( 1 인) : 노기팔

○참석직원 : 임춘환 법인사무국 사무국장(간사)

IV. 부의안건

1. 학교법인대진대학교 이사 선임 안
2. 학교법인대진대학교 정관 개정 안
3. 대진대학교 규정 개정 안
4. 학교법인대진대학교 사무국장 임용 안
5. 학교법인대진대학교 이사회 산하 미래기획위원회 신설 안
6. 대진대학교 RISE 사업단 신설 안
7. 대진대학교 교원 보직 임용 안
8. 2025학년도 2학기(2차) 전임교원 신규 총원 계획 안
9. 대진대학교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재임용 및 면직 안
10. 대진대학교 정규직원 신규 채용 계획 안
11. 학교법인 산하고등학교 사무직원 면직 안

간서명	박광훈	김욱	윤갑중
-----	-----	----	-----

12. 학교법인 산하기관 교직원 징계의결요구 및 징계위원회 구성 안  
긴급안건 : 대진대학교 규정 제정 안

V. 회의내용

윤은도 이사장 :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최를 선언하다. 당초 개최 통지한 내용대로 이사회를 진행한다.

2025학년도 제2차 이사회 회의에 앞서 긴급안건으로 ‘대진대학교 규정 제정 안’ 을 2025년 06월 19일 서면통보한 12개 안건 이후 제13호 안건으로 상정할 것을 의결하고 서면통보 한 12개의 안건 상정 전에 긴급안건 상정안을 먼저 의결하다.

임춘환 간사 : 긴급안건인 ‘대진대학교 규정 제정 안’ 에 대하여 본회의 제13호 안건으로 상정하여 의결하여 줄 것을 제안하다.

윤은도 이사장 : ‘대진대학교 규정 제정 안’ 에 대하여 사립학교법 제17조 3항 및 학교법인대진대학교 정관 제28조 3항에 근거하여 본회의 제13호 의안으로 안건 상정 여부를 요구하다.

이 사 : 참석이사 6명 찬성, 0명 반대

( 찬성 : 윤은도 이사장, 박광훈 이사, 이태열 이사, 김화옥이사,  
김욱 이사, 조태형 이사      반대 : 없음)

( 이사 전원 거수로 찬성을 표하다 )

참석이사 전원찬성으로 안건상정이 의결되다.

윤은도 이사장 : 제1호의 의안으로 ‘학교법인대진대학교 이사 선임 안’ 을 상정하며 백학문 이사가 개인사유로 6월 18일자로 사임함에 따라 학교법인 정관 제 20조에 의거하여 종단에서 추천한 일반이사(교육이사)로 한인희 후보자에 대하여 선임안을 상정하다.

학교법인대진대학교 한인희 후보자에 대하여 의결을 요구하다.

간서명	박광훈	김욱	윤은도
-----	-----	----	-----

박광훈 이사 : 선임에 동의하다.

이태열 이사 : 재청하다.

윤은도 이사장 : 제1호 의안에 대하여 박광훈 이사께서 동의하고 이태열 이사께서 재청하였으므로 표결에 부치다.

이 사 : 참석이사 6명 찬성, 0명 반대

( 찬성 : 윤은도 이사장, 박광훈 이사, 이태열 이사, 김화옥이사,  
김옥 이사, 조태형 이사      반대 : 없음)

( 이사 전원 거수로 찬성을 표하다 )

윤은도 이사장 :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제1호의 의안인 ‘학교법인대진대학교 이사 선임 안’ 은 다음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.

- 다 음 -

- 한인회 을 학교법인대진대학교 일반이사 및 교육이사로 2025년 08월 18일부터 2028년 10월 22일까지 선임

- 이상 1명 -

윤은도 이사장 : 제2호 의안으로 ‘학교법인대진대학교 정관 개정 안’ 을 상정하며 의안설명을 요청하다.

임춘환 간사 : 제2호의 의안을 준비된 자료에 의거 상세하게 설명하다.

김화옥 이사 : 충분히 검토한 내용이므로 의결에 동의하다.

조태형 이사 : 재청하다.

윤은도 이사장 : 제2호 의안에 대하여 김화옥 이사께서 동의하고 조태형 이사께서 재청하였으므로 표결에 부치다.

간서명	박 광 훈	김 옥	윤 은 도
-----	-------	-----	-------

이 사 : 참석이사 6명 찬성, 0명 반대

( 찬성 : 윤은도 이사장, 박광훈 이사, 이태열 이사, 김화옥이사,  
김옥 이사, 조태형 이사      반대 : 없음)

( 이사 전원 거수로 찬성을 표하다 )

윤은도 이사장 :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제2호의 의안인 ‘학교법인대진대학교 정관 개정 안’ 은 불임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.

윤은도 이사장 : 제3호 의안으로 ‘대진대학교 규정 개정 안’ 을 상정하며 의안설명을 요청하다.

임춘환 간사 : 제3호의 의안을 준비된 자료에 의거 상세하게 설명하다.

이태열 이사 : 충분히 검토한 내용이므로 의결에 동의하다.

박광훈 이사 : 재청하다.

윤은도 이사장 : 제3호 의안에 대하여 이태열 이사께서 동의하고 박광훈 이사께서 재청하였으므로 표결에 부치다.

이 사 : 참석이사 6명 찬성, 0명 반대

( 찬성 : 윤은도 이사장, 박광훈 이사, 이태열 이사, 김화옥이사,  
김옥 이사, 조태형 이사      반대 : 없음)

( 이사 전원 거수로 찬성을 표하다 )

윤은도 이사장 :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제3호의 의안인 ‘대진대학교 규정 개정 안’ 은 불임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.

윤은도 이사장 : 제4호 의안으로 ‘학교법인대진대학교 사무국장 임용 안’ 을 상정하며 의안설명을 요청하다.

간서명	박광훈	김옥	윤장동
-----	-----	----	-----

임춘환 간사 : 제4호의 의안을 준비된 자료에 의거 상세하게 설명하다.

김화옥 이사 : 충분히 검토한 내용이므로 의결에 동의하다.

김 옥 이사 : 재청하다.

윤은도 이사장 : 제4호 의안에 대하여 김화옥 이사께서 동의하고 김옥 이사께서 재청 하였으므로 표결에 부치다.

이 사 : 참석이사 6명 찬성, 0명 반대

( 찬성 : 윤은도 이사장, 박광훈 이사, 이태열 이사, 김화옥이사,  
김옥 이사, 조태형 이사      반대 : 없음)

( 이사 전원 거수로 찬성을 표하다 )

윤은도 이사장 :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제4호의 의안인 ‘학교법인대진대학교 사무국장 임용 안’ 은 다음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.

- 다 음 -

● 백학문  
임용 함.

을 학교법인대진대학교 법인사무국 사무국장으로

- 이상 1명(임용기간: 2025.07.01. ~ 2026.06.30.) -

윤은도 이사장 : 제5호 의안으로 ‘학교법인대진대학교 이사회 산하 미래기획위원회 신설 안’ 을 상정하며 의안설명을 요청하다.

임춘환 간사 : 제5호의 의안을 준비된 자료에 의거 상세하게 설명하다.

이태열 이사 : 충분히 검토한 내용이므로 의결에 동의하다.

김화옥 이사 : 재청하다.

윤은도 이사장 : 제5호 의안에 대하여 이태열 이사께서 동의하고 김화옥 이사께서 재

간서명	백 광 훈	김 옥	윤 은 도
-----	-------	-----	-------

청하였으므로 표결에 부치다.

이 사 : 참석이사 6명 찬성, 0명 반대

( 찬성 : 윤은도 이사장, 박광훈 이사, 이태열 이사, 김화옥이사,  
김옥 이사, 조태형 이사      반대 : 없음)

( 이사 전원 거수로 찬성을 표하다 )

윤은도 이사장 :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제5호의 의안인 ‘학교법인대진대학교 이사회 산하 미래기획위원회 신설 안’ 은 불임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.

윤은도 이사장 : 제6호 의안으로 ‘대진대학교 RISE 사업단 신설 안’ 을 상정하며 의안설명을 요청하다.

임춘환 간사 : 제6호의 의안을 준비된 자료에 의거 상세하게 설명하다.

박광훈 이사 : 충분히 검토한 내용이므로 의결에 동의하다.

조태형 이사 : 재청하다.

윤은도 이사장 : 제6호 의안에 대하여 박광훈 이사께서 동의하고 조태형 이사께서 재청하였으므로 표결에 부치다.

이 사 : 참석이사 6명 찬성, 0명 반대

( 찬성 : 윤은도 이사장, 박광훈 이사, 이태열 이사, 김화옥이사,  
김옥 이사, 조태형 이사      반대 : 없음)

( 이사 전원 거수로 찬성을 표하다 )

윤은도 이사장 :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제6호의 의안인 ‘대진대학교 RISE 사업단 신설 안’ 은 다음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.

간서명	박광훈	김옥	윤갑동
-----	-----	----	-----

- 다 음 -

● 대진대학교 사업단 내 RISE 사업단 신설

신설일 : 2025.07.01.일자

- 이 상 -

윤은도 이사장 : 제7호 의안으로 ‘대진대학교 교원 보직 임용 안’ 을 상정하며 의안 설명을 요청하다.

임춘환 간사 : 제7호의 의안을 준비된 자료에 의거 상세하게 설명하다.

김화옥 이사 : 충분히 검토한 내용이므로 의결에 동의하다.

김 옥 이사 : 재청하다.

윤은도 이사장 : 제7호 의안에 대하여 김화옥 이사께서 동의하고 김옥 이사께서 재청 하였으므로 표결에 부치다.

이 사 : 참석이사 6명 찬성, 0명 반대

( 찬성 : 윤은도 이사장, 박광훈 이사, 이태열 이사, 김화옥이사,  
김옥 이사, 조태형 이사      반대 : 없음)

( 이사 전원 거수로 찬성을 표하다 )

윤은도 이사장 :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제7호의 의안인 ‘대진대학교 교원 보직 임용 안’ 은 다음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.

- 다 음 -

● 소

교수를 대진대학교 대외협력부총장

(겸 행정부총장)으로 임용 함.

- 이상 1명(임기:2025.07.01. ~ 2027.06.30) -

윤은도 이사장 : 제8호 의안으로 ‘2025학년도 2학기(2차) 전임교원 신규 총원 계획 안’ 을 상정하며 의안설명을 요청하다.

간서명	박 광 훈	김 옥	윤 광 동
-----	-------	-----	-------

임춘환 간사 : 제8호의 의안을 준비된 자료에 의거 상세하게 설명하다.

조태형 이사 : 충분히 검토한 내용이므로 의결에 동의하다.

김화옥 이사 : 재청하다.

윤은도 이사장 : 제8호 의안에 대하여 조태형 이사께서 동의하고 김화옥 이사께서 재청하였으므로 표결에 부치다.

이 사 : 참석이사 6명 찬성, 0명 반대

( 찬성 : 윤은도 이사장, 박광훈 이사, 이태열 이사, 김화옥이사,  
김옥 이사, 조태형 이사      반대 : 없음)

( 이사 전원 거수로 찬성을 표하다 )

윤은도 이사장 :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제8호의 의안인 ‘2025학년도 2학기(2차) 전임교원 신규 총원 계획 안’ 은 붙임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.

윤은도 이사장 : 제9호 의안으로 ‘대진대학교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재임용 및 면직 안’ 상정하며 의안설명을 요청하다.

임춘환 간사 : 제9호의 의안을 준비된 자료에 의거 상세하게 설명하다.

박광훈 이사 : 충분히 검토한 내용이므로 의결에 동의하다.

김 옥 이사 : 재청하다.

윤은도 이사장 : 제9호 의안에 대하여 박광훈 이사께서 동의하고 김옥 이사께서 재청하였으므로 표결에 부치다.

이 사 : 참석이사 6명 찬성, 0명 반대

( 찬성 : 윤은도 이사장, 박광훈 이사, 이태열 이사, 김화옥이사,

간서명	박 광 훈	김 옥	윤 은 도
-----	-------	-----	-------

김옥 이사, 조태형 이사      반대 : 없음)

( 이사 전원 거수로 찬성을 표하다 )

윤은도 이사장 :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제9호의 의안인 ‘대진대학교 비정년트랙 전  
임교원 재임용 및 면직 안’ 은 불임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.

윤은도 이사장 : 제10호 의안으로 ‘대진대학교 정규직원 신규 채용 계획 안’ 을 상정  
하며 의안설명을 요청하다.

임춘환 간사 : 제10호의 의안을 준비된 자료에 의거 상세하게 설명하다.

김 옥 이사 : 충분히 검토한 내용이므로 의결에 동의하다.

김화옥 이사 : 재청하다.

윤은도 이사장 : 제10호 의안에 대하여 김옥 이사께서 동의하고 김화옥 이사께서 재청  
하였으므로 표결에 부치다.

이 사 : 참석이사 6명 찬성, 0명 반대

( 찬성 : 윤은도 이사장, 박광훈 이사, 이태열 이사, 김화옥이사,  
김옥 이사, 조태형 이사      반대 : 없음)

( 이사 전원 거수로 찬성을 표하다 )

윤은도 이사장 :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제10호의 의안인 ‘대진대학교 정규직원 신규  
채용 계획 안’ 은 불임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.

윤은도 이사장 : 제11호 의안으로 ‘학교법인 산하고등학교 사무직원 면직 안’ 을 상  
정하며 의안설명을 요청하다.

임춘환 간사 : 제11호의 의안을 준비된 자료에 의거 상세하게 설명하다.

간서명	박 광 훈	김 옥	이 태 열
-----	-------	-----	-------



박광훈 이사 : 재청하다.

윤은도 이사장 : 제12호 의안에 대하여 조태형 이사께서 동의하고 박광훈 이사께서 재청하였으므로 표결에 부치다.

이 사 : 참석이사 6명 찬성, 0명 반대

( 찬성 : 윤은도 이사장, 박광훈 이사, 이태열 이사, 김화옥이사,  
김욱 이사, 조태형 이사      반대 : 없음)

( 이사 전원 거수로 찬성을 표하다 )

윤은도 이사장 :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

안이 붙임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. 단 개인정보보호와 확정된 징계사안이 아니므로 붙임은 비공개 처리한다.

임춘환 간사 : 제12호의 의안 중 학교법인 내부 징계위원의 사임에 따라 산하기관 징계위원 구성 안을 준비된 자료에 의거 상세하게 설명하다.

조태형 이사 : 산하고등학교 교원징계위원회 내부 징계위원으로 김화옥 이사를 추천하다.

박광훈 이사 : 추천에 동의하다.

김 욱 이사 : 재청하다.

윤은도 이사장 : 제12호 의안에 대하여 조태형 이사께서 추천하고 박광훈 이사께서 동의하고 김욱 이사께서 재청하였으므로 표결에 부치다.

이 사 : 참석이사 6명 찬성, 0명 반대

간서명	박 광 훈	김 욱	윤 은 도
-----	-------	-----	-------

( 찬성 : 윤은도 이사장, 박광훈 이사, 이태열 이사, 김화옥이사,  
김옥 이사, 조태형 이사      반대 : 없음)

( 이사 전원 거수로 찬성을 표하다 )

윤은도 이사장 :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제12호의 의안인 ‘학교법인 산하기관 교직원  
징계의결요구 및 징계위원회 구성 안’ 중 징계위원회 구성 안은 다음과 같이  
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.

- 다 음 -

- 김화옥 이사를 학교법인 산하고등학교 교원징계위원회 내부위원으로 임명  
- 이상 1명(임기 : 2025.07.01. ~ 2028.04.30.) -

윤은도 이사장 : 제13호 의안으로 ‘대진대학교 규정 제정 안’ 을 상정하며 의안설명  
을 요청하다.

임춘환 간사 : 제13호의 의안을 준비된 자료에 의거 상세하게 설명하다.

김 옥 이사 : 충분히 검토한 내용이므로 의결에 동의하다.

박광훈 이사 : 재청하다.

윤은도 이사장 : 제13호 의안에 대하여 김옥 이사께서 동의하고 박광훈 이사께서 재청  
하였으므로 표결에 부치다.

이 사 : 참석이사 6명 찬성, 0명 반대

( 찬성 : 윤은도 이사장, 박광훈 이사, 이태열 이사, 김화옥이사,  
김옥 이사, 조태형 이사      반대 : 없음)

( 이사 전원 거수로 찬성을 표하다 )

윤은도 이사장 :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제13호의 의안인 ‘대진대학교 규정 제정  
안’ 은 불임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.

간서명	박 광 훈	김 옥	조 태 형
-----	-------	-----	-------

윤은도 이사장 : 이사회의를 간서명 대표임원 선임(안)입니다.

이태열 이사 : 이사회의를 간서명 대표임원으로 박광훈 이사, 김욱 이사, 윤갑중 감사를 선임할 것을 동의하다.

김화옥 이사 : 재청하다.

윤은도 이사장 : 이사회의를 대표임원으로 박광훈 이사, 김욱 이사, 윤갑중 감사로 선임할 것을 이태열 이사께서 동의하고 김화옥 이사께서 재청하였으므로 표결에 부치다.

이 사 : 참석이사 6명 찬성, 0명 반대

( 찬성 : 윤은도 이사장, 박광훈 이사, 이태열 이사, 김화옥이사,  
김욱 이사, 조태형 이사      반대 : 없음)

( 이사 전원 거수로 찬성을 표하다 )

윤은도 이사장 :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이사회의를 간서명 대표임원으로 박광훈 이사, 김욱 이사, 윤갑중 감사가 선임되었음을 선포하다.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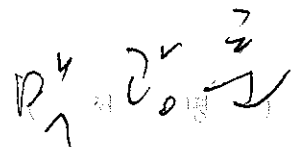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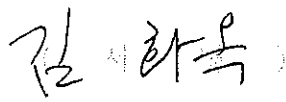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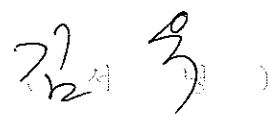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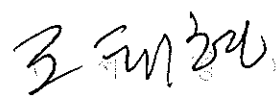

윤은도 이사장 : 기타 다른 의견이 없음을 확인한 후 11:50에 폐회를 선언하다.

2025년 06월 30일 월요일

학교법인 대진대학교 이사회

간서명	박광훈	김욱	윤갑중
-----	-----	----	-----

위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서면 날인하다.

학교법인 대진대학교	이 사 장	윤 은 도	
	이 사	박 광 훈	
	이 사	이 태 열	
	이 사	김 화 옥	
	이 사	김 옥	
	이 사	조 태 형	
	감 사	윤 갑 중	

# 학교법인대진대학교 정관 개정

## 학교법인대진대학교 정관

학교법인대진대학교 정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 35 조의 2 (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)

① (현행과 동일)

1. 교 수 : 정 년
2. 부 교 수 : 계약 기간 <개정 2025.06.30.>
3. 조 교 수 : 계약 기간 <개정 2025.06.30.>
4. 삭 제
5. 삭 제

② ~ ⑪ (현행과 동일)

제 61 조의 4 (원격영상회의 방식의 활용) 징계위원회는 징계위원이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당 징계위원은 징계위원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.

[본조 신설 2025.06.30.]

제 71 조 (징계) ① (현행과 동일)

② 삭제 <2025.06.30.>

[제목개정 2025.06.30.]

제 73 조 (총장 등) ① ~ ② (생략)

③ 대학발전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1인의 행정부총장, 3인의 대외협력부총장과 2인의 산학협력 부총장을 둘 수 있다. 단, 개방형이 아닌 대외협력부총장은 행정부총장을 겸한다.

<개정 2021.6.9., 2022.03.18, 2023.01.27., 2023.02.27., 2024.02.22., 2024.04.24., 2025.06.30.>

④ ~ ⑥ (생략)

부칙

1. (시행일) 이 정관은 2025년 06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간서명	백 광훈	김 우	윤갑동
-----	------	-----	-----

# 대진대학교 규정 개정

## 규정 개정

### 대학원 학칙

대학원 학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3조의3(졸업시험) 특수대학원은 연구보고서 외에 졸업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다.

[본조신설 2025.06.30.]

#### 부 칙

1. (시행일) 이 변경 규정은 2025년도 06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2. (특수대학원의 졸업시험에 관한 적용례) 제23조의3의 변경 규정은 2025학년도 전기(2026년 2월) 졸업 대상자부터 적용한다.

간서명	박광훈	김우	윤갑봉
-----	-----	----	-----

## 교직원복무규정

교직원복무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(휴가의 구분) ① ~ ② (현행과 동일)

③ 휴가는 오전, 오후의 반일 단위 또는 반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, 반일 휴가는 2회 1일, 반반일 휴가는 4회 1일로 계산한다. <개정 2025.06.30.>

제21조(특별휴가) ①~ ② (현행과 동일)

③ 단, 당해 학년도를 제외한 과거 미집행 연가일수가 60일 미만인 자로서 당해학기 정년 퇴직 예정자는 미집행 잔여연가 일수만큼 특별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. <신설 2025.06.30.>

### 부 칙

1. (시행일) 이 변경 규정은 2025년도 06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간서명	백광훈	김우	유갑중
-----	-----	----	-----

# 학교법인대진대학교 이사회 산하 미래기획위원회 신설

1. 신설일 : 2025.07.01일자
2. 위원 임기 : 2025.07.01. ~ 2026.06.30.(1년) 중임 가능

연번	성명
1	박
2	김
3	방
4	유
5	윤
6	이
7	김
8	신

■ 미래기획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일체를 이사장에게 위임한다.

- 이상 -

간서명	박 광훈	김 옥	원갑동
-----	------	-----	-----

# 대진대학교 2025학년도 2학기(2차) 전임교원 신규충원 계획

## 비정년트랙 전임교원(산학협력)

연번	단과대학명/학과명	초빙분야	지원자격	인원
1	산학협력단	이공계열 [부교수]	1.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2. 최근 3년간 연구업적 200% 이상인 자 3. 해당분야 산업체 또는 연구기관 경력 10년 이상인 자	2명
2	산학협력단	이공계열 [조교수]	1. 해당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2. 최근 3년간 연구업적 100% 이상인 자 3. 해당분야 산업체 또는 연구기관 경력 10년 이상인 자	2명
3	산학협력단	예술계열 [부교수]	1.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2. 최근 3년간 연구업적 200% 이상인 자 3. 해당분야 산업체 또는 연구기관 경력 10년 이상인 자	1명
4	산학협력단 스마트모빌리티전공 [파견 예정]	IT분야 [조교수]	1. 해당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2. 최근 3년간 연구업적 100% 이상인 자 3. 해당분야 산업체 또는 연구기관 경력 10년 이상인 자	2명
5	산학협력단 DNA플러스융합기술 전문대학원 [파견 예정]	토목공학 [부교수]	1. 토목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2. 최근 3년간 연구업적 200% 이상인 자 3. 해당분야 산업체 또는 연구기관 경력 10년 이상인 자	1명
6	산학협력단 DNA플러스융합기술 전문대학원 [파견 예정]	토목공학 [조교수]	1. 토목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2. 최근 3년간 연구업적 100% 이상인 자 3. 해당분야 산업체 또는 연구기관 경력 10년 이상인 자	1명

- 이 상 -

## 비정년트랙 전임교원(강의전담)

연번	단과대학명/학과명	초빙분야	지원자격	인원
1	국제협력대학 /국제경영학과	경영학	1. 경영학/국제경영학/국제학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 2. 최근 3년간 연구업적 100% 이상인 자 3. 영어강의 가능자 - 해당분야 대학(전문대 포함) 영어강의 2개학기 이상 경력자	1명

- 이 상 -

간서명	백 과 룬	김 옥	유 감 폭
-----	-------	-----	-------

# 대진대학교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재임용 및 면직

## 1. 재임용

### 가.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[강의전담교원]

소 속	성명	생년월일	임용기간
간호학과	이		2025년09월01일 ~ 2027년08월31일

- 이상 1명 -

### 나.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[산학협력중점교원]

소 속	성명	생년월일	임용기간
취업팀	조		2025년09월01일 ~ 2027년08월31일
취업팀	문		
교양학부	김		
산학협력단	김		2025년10월01일 ~ 2027년09월30일
산학협력단	문		
산학협력단	전		
산학협력단	김		
산학협력단	이		2025년09월01일 ~ 2027년08월31일

- 이상 8명 -

### 다.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[외국인전임교원]

소 속	성명	생년월일	임용기간
교양학부	F		2025년09월01일 ~ 2027년08월31일

- 이상 1명 -

## 2. 면직

###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[산학협력중점교원]

소 속	성명	생년월일	면직일
취업팀	송		2025년09월01일

- 이상 1명 -

간서명	백광훈	김우	윤갑중
-----	-----	----	-----

# 대진대학교 정규직원 신규 채용 계획

소속	채용분야 및 인원	지원자격	임용예정
정보운영팀	전산운영 일반직 9급 1명	<p>&lt;필수사항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사립학교 교직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</li> <li>•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</li> <li>• 전산 또는 통신 관련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</li> <li>• 정보인프라(네트워크, 서버, 정보보안 시스템)구축 또는 운영업무 3년이상 경력자</li> </ul> <p>&lt;우대사항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대학교 전산부서 근무경력자</li> <li>• 네트워크, 서버, 보안 관련 전문 자격증 보유자</li> <li>•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</li> </ul>	2025.09.01

간서명	백광훈	김욱	유갑중
-----	-----	----	-----

# 대진대학교 규정 제정

## 규정 제정

### 교원인사검증위원회 규정

교원인사검증위원회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.

제1조(목적) 본 규정은 대진대학교 위원회 설치규정에 의거하여 설치되는 교원인사검증위원회 (이하 “위원회” 라 한다)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구성) ① 위원회는 내부 전임교원 6명 이내, 외부위원 4명 이내로 총장이 위촉한다.

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하며, 위원장이 회의를 총괄한다. 단, 위원장의 부재 시 부위원장이 대행한다.

제3조(임기)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② 결원에 의하여 새로 임명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.

제4조(기능)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전임교원 필수 총원 학과 또는 필수 총원 분야 검토 및 제안
2.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전 전임교원 신규총원 계획(안) 사전 검증
3.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전 전임교원 신규채용의 각 심사 단계별 적법성 사전 검증
4.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

제5조(회의) ① 총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.

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단,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
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, 출석위원의 확인 서명을 받아야 한다.

제6조(간사 및 서기)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.

② 간사는 교무팀 팀장이 되고, 서기는 교무팀 팀원 중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.

제7조(위원회 사무) 위원회 사무는 교육혁신처 교무팀에서 관장하며, 회의내용을 작성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#### 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5년 06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간서명	백영훈	김욱	유갑득
-----	-----	----	-----